



환경부



수신 경기도지사(공원녹지과장)
(경유)

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질의 회신

1. 경기도 공원녹지과-11748(2121.7.27.) 호와 관련입니다.

2.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.

가. 질의요지
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공원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·공람하고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는 바,
 -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?

나. 회신내용
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설명회(대면)를 개최하여야 합니다.
 - 또한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,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확산은 동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따라서,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사유 발생시에는 설명회를 연기하되, 계획수립 또는 승인기관장이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역조치 등의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온-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.
 - 그러나 최근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의 거리두기 4단계 발령으로 주민설명회 개최가 불가하며,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중차대한 지장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, 계획수립 또는 승인 기관의 장은 온라인 개최 등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.
 -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고, 더불어 개최방법과 참여방법, 의견제출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등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. 끝.

환 경 부 장 관

환경사무관

강찬

과장

전결 2021.8.19.

오훈진

협조자

시행 국토환경정책과-588

접수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(어진동)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/ <http://me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7276 팩스번호 044-201-7284 / kangchan@me.go.kr / 대국민 공개